

일련번호	9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서초구청 (나부서)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주의요구	1		

제 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내용 】

서초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18. 6.20.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8.12.17., 금액 590백만 원)을 체결하여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이 건 건설공사 중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하여 '18. 7. 9. B사(준공 '18.11.18., 금액 193백만 원) 및 '18. 7.10. C사(준공 '18.11.18., 금액 186백만 원)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따르면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16.9., 국토교통부)」에 따라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현황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 건설공사의 하수급인(B사, C사)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관리,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해당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를 각각 2개소, 2개소 공사현장에 이중 배치하였다.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부적정하게 현장 배치하였는데도 공사관리관은 건설공사 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통보받은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내역을 확인·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초구청장은

건설기술자를 부적정하게 배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벌칙) 제4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등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공사관리관 및 진행 중인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